

환경부 공고 제2015-54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9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상 보고·등록 등에 따른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중복 기재되는 항목을 삭제하는 등 이행상의 절차 또는 방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법령의 원활한 안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R&D용 물질 등록면제확인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7조, 별표 5)

- 1) 등록면제확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일반사항 및 안전관리계획서로 통합·간소화
- 2) 제조·수입량이 0.1톤 미만인 경우에는 사후 처리결과 보고를 생략

나. 시약용 물질 등록면제확인 주기 완화(안 제7조제4항)

시약이 동일물질인 경우 면제확인 주기를 매년에서 최초 1회로 변경

다. 공동등록 대표자 선정방식 개선(안 제17조제1항)

공동등록 대표자 선정방식을 현행 다수결에서 자율적 합의로 변경

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신고절차·방법 개선(안 제49조, 별지 제33호, 제34호)

- 1) 선임된 자가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일원화
- 2) 선임된 자를 교체하는 경우 현행 해임서, 선임서를 각각 제출하는 것에서 변경서만 제출하도록 간소화
- 3) 선임된 자의 신고증 서식에서 물질명·고유번호 항목을 제품명 항목으로 변경

바. 중복 기재되는 항목을 삭제(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제12호 서식)

소량등록 신청서식에서 중복 기재되는 노출정보 항목을 삭제하고, 보고 및 등록 등의 서식 중 중복 기재되는 수입량 항목을 삭제

3. 의견제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 044-201-6780, 6785, FAX : 044-201-6786, 전자우편 : ifanger@korea.kr, kwang2n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